

2014년 9월 22일

이안 버니
캐나다 수석대표
캐나다 오타와

이안 버니 차관보 귀하,

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양 당사국의 부속서 I의 유보목록의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캐나다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국의 인에게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하여,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. 1)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. 2)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그 당사국의 인에 대한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. 그리고 3) 제11.10조(투명성)와 합치하는 규범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.

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/서명/

최경림
대한민국 수석대표